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61,012,884	13,830,387
일반회계	425,312,989	12,759,390
특별회계	35,699,895	1,070,997
공기업특별회계	32,737,064	982,112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9,022,890	570,68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3,714,174	411,425
기타특별회계	2,962,831	88,885
지하수특별회계	277,000	8,310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282,178	38,465
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	1,403,653	42,11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654,67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인건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업무추진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복리후생비